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 |
|----------|------|
| 의안 번호 | 1964 |
|----------|------|

2017년 8월 30일
교육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7년 8월 11일, 김경자(양천) 의원
2. 회부일자 : 2017년 8월 16일
3. 상정일자

- 제27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17년 8월 30일 상정·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경자(양천) 의원)

1. 제안이유

- 인종, 종교, 성별 등에 관한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표현은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회통합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함.

특히, 학교 내의 차별적·혐오적인 표현으로 인해 학생이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인권의식을 함양하는데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

따라서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과 학생이 인종, 종교, 성별 등에 관한 혐오적인 표현을 통해 차별적 상황을 조장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인권보호를 보다 내실있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이 차별적 언어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3항).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17년 8월 11일 김경자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1964호로 발의 되어 2017년 8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차별적 언행과 혐오적 표현 등을 금지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인권을 보다 내실있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학생인권 상담 현황과 개정 취지면에서의 검토

-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2013부터 2017년 2분기까지 학생인권 상담 현황을 살펴보면 차별에 대한 상담이 143건, 언어폭력 등에 대한 상담이 766건으로 나타났고,¹⁾ 특히 2016년을 기준으로 차별과 언어폭력 등에 대한 상담은 전체 1,431건의 상담사례 중 23.5%인 337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17년 2분기의 경우도 전체 732건의 상담 및 구제신청 중 차별과 언어폭력이 106건이나 접수되어 차별과 언어폭력 등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민주시민교육과), 2017년 2분기(3월~6월) 학생인권 상담 및 조사, 권리구제 현황. 2017.7 [붙임1] 참고.

- 더욱이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대중화와 더불어 ‘김치녀’, ‘여혐’, ‘한남충’, ‘맘충’ 등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혐오적 표현뿐만 아니라 장애인이나 이주민 등의 소수자와 약자들에 대한 차별적 표현 등이 빠르게 양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차별적 언사와 혐오적 표현 등으로 인한 학생인권 침해사례는 더욱 확산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사료됩니다.²⁾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 제5조제3항이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을 비롯한 학생에 이르기까지 차별을 조장하는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이와 같은 사회적 우려를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인권을 보다 내실있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생각됩니다.

나. 혐오적 표현의 규범화에 대한 검토

- 동 개정조례안의 혐오적 표현 금지와 관련하여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마이크로소프트 등 IT 대기업들은 지난 2016년 5월 31일 유럽연합과 손잡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행동강령(헤이트 스피치 금지협약)에 공동서명 한 바 있습니다.

동 행동강령은 인종주의와 제노포비아(외국인 혐오증)을 부추기는 혐오발언(헤이트 스피치)을 가려내어 24시간 이내에 삭제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일본도 ‘재일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의 모임’의 혐한시위가 과격화 되면서 ‘인종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철폐를 위한 시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안’과 ‘본국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한 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는 등 혐오적 표현에 대한 적극적

2) 2016년 5월 17일 발생한 강남역 살인 사건은 혐오에 의한 범죄를 극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하겠음.

인 법제화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그러나 ‘혐오적 표현(헤이트 스피치)’은 감정이 담긴 개념으로 국제인권법상으로도 통일된 정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그 기준도 모호한 것이 현실입니다.³⁾

또한 ‘혐오적 표현’이라는 모호한 잣대로 인해 「대한민국헌법」 제18조, 제21조와 제22조가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혐오적 표현 규범화 반대론도 있는 상황입니다.⁵⁾

-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동 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충분히 숙지하여 학교생활 또는 교육활동 등에서 금지되어야 하는 혐오적 표현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은 차별행위의 한 형태로 폭력행위를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 조례 제6조를⁶⁾ 개정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을(민주시민교육과-12104,2017.8.24) 제출한 바 있습니다.

3) 참고로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평의회 각료회의에서 혐오적 표현을 “인종적 혐오, 외국인혐오, 반유대주의, 또는 공격적인 국가주의나 자민족중심주의, 소수자·이주민을 향한 차별과 적대감 등으로 표현되는 불관용을 포함한 그 밖의 다른 불관용을 바탕으로 혐오를 확산, 선동, 고취, 또는 이를 정당화하는 모든 형태의 표현”으로 정의하고 있음(서울대학교 인권센터, ARTICLE19 혐오표현 해설, 2015 참고). 또한 그 행태는 차별적 괴롭힘이나 차별표시, 공개적인 멸시·모욕·위협, 증오선동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

4) 「대한민국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5)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2016. 12, 33p 참고.

6) 제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특정 집단이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설하는 행위나 모욕,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③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을 방지하여야 한다.

[표] 서울특별시교육청 개정의견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생략)</p> <p>② 학생은 특정 집단이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설하는 행위나 모욕,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p> <p>③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을 방지하여야 한다.</p> | <p>제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현행과 같음)</p> <p>② 학생은 특정 집단이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설하거나 혐오적 표현을 하는 행위, 모욕,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p> <p>③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혐오적 표현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을 하지 않아야 하며,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토론요지 : 생략.

Ⅵ.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Ⅶ.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Ⅷ.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Ⅸ.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생략) ② (생략)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u>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어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u> |